

금리인하요구권 안내문

항상 중국공상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중국공상은행에 기업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'금리인하요구제도'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■ 금리인하요구권이란

차주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(은행법 제 30조의2)를 말합니다.

■ 대상

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는 기업금융대출

■ 적용제외대상

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예) 차주의 신용도를 사용하지 않고 본사 또는 제3자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제공된 대출

■ 금리인하 신청사유

여신거래 기간 중 아래의 사유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.

사유	내용
재무상태 개선	- 이익 증가,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
신용도 상승	- 회사채 신용등급의 상승, 추가 담보 제공, 특허권 취득 등의 사유로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
기타	- 상기 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-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

■ 금리인하 신청방법

신청 방법은 영업점 방문, 서면, 이메일, 팩스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(신청시기·횟수제한 없음), 은행은 금리인하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■ 금리인하 신청시기

금리인하 요구사유 발생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■ 처리 결과 통보

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(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)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



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전화, 서면,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,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.

■ 유의사항

-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신용상태의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, 신청시점에 상관없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.

<끝>